

● 제301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2021. 6. 1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제출 】

의안번호 2406

I. 동의안 개요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1. 5. 25.
- 다. 회부일 : 2021. 5.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스페이스 살림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공사비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정산분과 일반음식점 활용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함
-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1년 1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3) 추정개요

① 추정예산 : 253,560천원

※ 총 출연금액 : 15,205,489천원 (기정 출연금액 : 14,951,929천원 포함)

② 추정필요성

- '20.10월 스페이스 살림이 준공되었으나,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에 대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 결과에 따른 보완 공사비 및 스페이스 살림 조성 공사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정산분 확보가 필요하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20년 8월부터 스페이스 살림 내 수익사업인 일반음식점(단독 및 푸드코트형)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이 계속 유찰됨에 따라 장기간 공실로 인한 수입 손실 및 입주기업 직원들의 식당 이용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공간 활용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여 총 253,560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음

③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253,560천원
 - ▶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무장애 인증 공사비 : 100,000천원
 - ▶ 스페이스 살림 조성 하수도원인자부담금(미정산분) : 78,000천원
 - ▶ 식당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 75,560천원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2021년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운영 출연금 편성을 위한 사전절차인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의결('20.09.15.)한 이후, 스페이스 살림 조성 관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건축물 BF 인증을 위한 추가 공사비와 일반음식점 활용도 개선을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u>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

-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통해 성평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으로 ‘스페이스살림의 운영 및 관리’를 사업으로 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관련 정책 연구·개발
2. 여성의 사회활동 네트워크의 거점화 사업
3.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자원화 사업
4.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사업
6. 여성의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사업
7. 여성관련 시설간 프로그램 연계 및 교류사업

- 1)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8. 서울여성플라자의 운영 및 관리

9.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

10. 여성자원봉사활동의 관리 및 육성사업

11. 여성관련시설의 효과적인 운영 및 여성·가족·보육·저출산, 아동·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 추가 출연금의 적절성

- 여성가족재단의 2021년 기정출연예산은 149억 5,192만원으로, 제1차 추경을 통해 2억 5,356만원을 증액하여 총 출연예산(안) 152억 549만원을 편성하는 안으로 증액사유로는 스페이스 살림 관련 미납 부담금 및 내부 추가공사 소요액을 반영하기 위함임.
- 여성가족재단의 고유사무인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 및 관리의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추가 출연됨.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기정 예산	증감액	추경 예산(안)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14,951,929	253,560	15,205,489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출연금	○ 스페이스 살림 공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78,000
	○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BF 인증 공사비		100,000
	○ 스페이스 살림 2층 식당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비		75,560
	증감사유		
	- 스페이스 살림 공사로 인한 미납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및 스페이스 살림 건축물 BF인증을 위한 추가 공사비 책정 - 스페이스 살림 2층 식당 공간 활용도 개선 위한 내부 설비 및 인테리어 공사 필요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납 부담금은 스페이스 살림이 준공('20.10.)된 이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20년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잔여예산에 한하여 분할납부하고, 차액분에 대해서는 '21년도에 추가예산 확보 후 납부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동작구가 협의한 사항임²⁾.

<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산액) 현황 >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산액)	금액
산출금액	148,228,920원
분할납부	70,294,720원
차액	77,934,200원

- 건축물 BF 인증을 위한 공사비는 스페이스 살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³⁾ 인증 제도 심사결과 나온 이용·이동·접근에 불편함이 있는 부분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보완공사를 반영하기 위한 사항임.
- 스페이스 살림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정산금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공사비는 건축물 준공에 따른 부담금 납부와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가 보완조치로 타당한 출연금 확대 편성으로 사료됨.
- 다만, 스페이스살림 내 일반음식점과 관련된 공사비를 추경안에 반영할 계획인바, 현재('21.6.18.)까지 일반음식점 운영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임.
- 운영업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층 식당내부 변경 공사를 통해 공간 활용도를 개선하는 사업은 향후 운영업체가 입점을 계획할 시 공간적 제약과 추가 공사비로 인한 비용 증가로 또 다시 입점이 유찰될 우려가

2)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3조(원인자부담금) ⑥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 되는 사업 등의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이고,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과권자와 납부의무자가 협의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다.

3)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임(한국장애인개발원).

있으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할 것임.

4 추가 출연에 따른 동의안 제출의 타당성

- 2021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앞서 여성가족재단 운영 예산의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⁴⁾에 따라 사전절차로서 서울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의결(2020.09.15.)받았고, 이후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됨(2021.05.25.).
- 동일한 회계연도의 예산 출연에 대해 이미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이 출연된 이후, 고유사무의 범위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추가 출연에 대해 또 다시 의회의 동의를 의결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이와 관련하여, 의회의 추가 출연동의에 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르면,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4)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관련 검토의견⁵⁾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는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자·출연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출자·출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따라서 자치단체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려는 경우 당초 사전의결을 받았던 출자·출연 필요성, 사업내용 등의 변동이 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다시 사전의결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예산안이 확정된 후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사업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의 일부를 조정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라면,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사전의결 사항의 변동여부는 사안에 따라 지방의회와 함께 자치단체가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이번 동의안과 같이 이미 출연이 기동의된 사안에 대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출연금 금액의 변경을 가하는 것이지 별도의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바, 의회의 의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할 것임.

문 의 처

장일진 입법조사관 (02-2180-8148)

5) 법제처 행정법령해석과-12, 2019.01.31.; 공기업담당관-1583, 2019.2.1.